

창원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가합55098(본소), 2019가합1015(반소) 판결

[공사대금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5. 26 선고 2021나11940(본소), 2021나11957(반소)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가합55098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태형, 문성원,

변론 종결2021. 4. 1.

판결 선고2021. 5.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0,665,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2021. 5.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3,742,5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창호공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건설업 관련 부품 판매, 금속조립구조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8. 5.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C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외 12필지 지상 E호텔 신축공사 중 커튼월 및 AL창호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8. 6.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커튼월 및 AL창호공사를 공사대금 3,930,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액수이다), 공사기간 2018. 7. 2.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 본계약

1. 계약명 : C-E호텔 신축공사 중 창호 및 금속 물품납품 계약서

2. 납품장소 : C-E호텔 현장(부산 해운대구 D)

3. 납품기간 : 2018년 7월 2.일~ 2019년 4월 30.일

4. 계약금액 : 3,930,300,000원(VAT포함)

공급가액 : 3,573,000,000원

부가가치세 : 357,300,000원

5. 대금 지불 방법 : 매월 말일 마감, 익월 말일 지급(현금지급조건)

- 계약선수금 : 선금금 55,000,000원(VAT 포함) - 선금금 이행증권 발행조건

- 중도금 : 현장담당자의 확인된 사항에 의해 지급

- 잔금 : 현장담당자의 확인된 사항에 의해 지급

7. 첨부 : 1)본계약서 1부, 납품계약일반조건서 1부, 상세 내역서 1부, 현장설명서 1부

■ 계약일반조건

제11조[대금지급]

(1) "을"은 "갑"의 제품검수에 합격한 후 제품대금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갑"은 계약의 목적물을 검수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을"은 제작품과 관련한 자재대 및 임금을 매월 체불 없이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을"이 진다.

(4) "을"은 전항의 자재대 및 임금을 체불할시 "갑"은 공사 수행을 위해 "을"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5) "갑"이 자재대 및 임금을 포함하여 "을"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을"이 이를 자재대금 채권자 및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청구가 되는 경우 "갑"이 이를 다시 변제하게 된 때에는 "을"이 "갑"이 지급한 금액의 3배액을 즉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체시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정산]

본 계약금액으로 공사를 마무리한다. 단 발주처의 증감으로 인한 금액변동시 계약금액 비율로 조정한다. 또한 물량(수량)정산시 현장여건상으로 소장(대리인)과 협의하여 증감사항을 협의할 경우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으니 꼭 본사 대표이사 승인결재합의서를 작성할 것

※ 중요 : 준공 후 계약된 수량에서 미납품 부분은 반드시 정산하며, 준공 시 확인되지 않아 미정산된 부분은 준공 후에라도 자진보고한다. 보고가 없을 시에는 미정산된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시공비, 운반비, 현장관리 포함

※자재비 직불동의서(자재 사급시 매월 기성에서 공제처리 함)

※노무비 직불동의서(노무비는 피고 직불 후 공제처리 함)

※물량 정산은 기성금을 매월 달성업무에 95% 지급 후 나머지는 정산완료 후 지급기로 한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C과 피고의 계약에 따른 현장설명서, 시방서 준수조건에 따르며 작업의뢰서 일식처리조건.

■ 현장설명서

3. 일반사항

3) 적용방법(우선순위)

③ 모든 물량은 당사가 제시한 내역서에 기준하여 계약 내역 작성하고, 실시공사 완료 후 최종 실물량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안전관리지침

7) 안전관리비는 계약금액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기성청구시

안전관리사용내역(사용내역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본, 사진대지)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사용항목 외 사용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위

견적서(이하 '최초 견적서'라고 한다)에는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된 공사별 세부견적이 첨부되어 있다.

1. 직접공사비		식	1.0	3,573,852,976
2. 간접공사비			0.0%	
합계				3,573,852,976
단수정리				-825,976
총계				3,357,000,000
특기사항				
1. 부가가치세 별도				
2. 내역외 공사별도입니다.				
(이하 생략)				

다.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및 타절합의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8. 7.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2019. 4. 말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9. 5. 22.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타절합의'라고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2019. 6. 4. 아래와 같이 정산방법에 대해 개괄적으로 합의하였고, 원고의 직원 F와 피고의 현장책임자인 G이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자재의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과 원고의 기성물량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2019. 6. 8. 위 서류에 서명날인하였다(이하 위 서류를 '이 사건 물량정산서'라고 한다).

■ 2019. 6. 4. E A 정산

- ① AI bar 잔여분 자재+가공비 정산에 태우고 반납한다.
- ② AI 복합판넬 자재+가공비 정산에 태우고 반납한다.
- ③ 실리콘 자재 정산 태우고 반납한다.
- ④ 자재 잔여분 매입금액(피고)으로 원고에 매수하고 정산에 반영한다.
- ⑤ 하드웨어는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에 반영한다.

- ⑥ 기성공제확인서(자재비 대납분)은 실투입비로 정리한다.
- ⑦ 물량정산은 6월 9일까지 완료하고 지급은 6월 14일까지 한다.
- ⑧ 물량정산은 실설치분으로 공정하게 한 것이며 협의하여 정산한다.
- ⑨ 잔여자재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납한다(6월 4일부터)
- ⑩ 간접비 관련 노무비, 보험 등의 증빙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한다(6월 5일)
- ⑪ 노무비는 직불한다(5월말).
- ⑫ AI bar 및 복합판넬가공비는 직불하고 공제한다.
- ⑬ 정산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물량정산서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한 다음 피고에게 2019. 6.

2. 기성공사대금을 2,768,080,06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정산내역서를, 2019. 7. 4.

기성공사대금을 2,695,667,407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정산내역서를, 2019. 7. 8.

기성공사대금을 2,700,465,353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정산내역서를, 2019. 7. 17.

기성공사대금을 2,500,465,353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정산내역서를 이메일로 각 전송하였다.

4) 피고는 원고가 3)항과 같이 전송한 정산내역서상 물량 또는 단가에 오류가 있거나, 중복 계산 등
수식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가 위 각 정산내역서에 기재한 기성공사대금을 다투었고, 2019. 9.

3. 원고에게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을 2,111,172,782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산정한 공사비집계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5)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의 공사대금지급

피고는 2018. 6. 8.부터 2019. 5. 2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합계
845,234,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공사계약 관계는 2019. 5. 22. 이 사건 타절합의에 따라 종료되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성공사대금 2,366,887,985원¹⁾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현장 작업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및 원고의 자재업체에 직불처리한 자재비 합계 2,328,622,500원²⁾ (=기 지급 공사대금 845,234,500원+ 임금 833,388,000원+ 자재비 650,0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잔대금은 38,265,485원(=2,366,887,985원-2,328,622,500원)이다.

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돈으로 인정한 것 외에 피고가 직불한 임금 및 자재비로 공제를 주장하는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어떤 명목으로 송금한 돈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자재를 납품한 업체 명의로 작성된 견적서 등도 실제 공사비와 달리 단가가 과다하게 부풀려 산정되었는바, 이는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38,265,4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³⁾.

나. 피고

이 사건 타절합의 당시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은 2,366,887,985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845,234,5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현장 작업자들에게 임금 854,119,29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의 거래업체에 자재비 및 임금으로 1,081,239,137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2,780,592,927원(=845,234,500원+854,119,290원+1,081,239,137원)을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위 2,780,592,927원 중 피고가 직불처리한 자재비 중 안전용품 자재대금으로 지급한 30,174,980원을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안전관리내역서를 C에 제출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원고를 대신하여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및 직불처리한 자재비 등을 공제(예비적으로 안전용품 자재대금은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없다.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또는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임금 및 자재비의 합계 2,780,592,927원에서 원고의 기성공사대금 2,366,887,985원을 공제한 나머지 413,704,942원(=2,780,592,927원-2,366,887,985원)의 지급을 구한다4).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타절합의 당시의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이 2,366,887,985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설령 원고가 기성공사대금의 액수가 2,366,887,985원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성공사대금의 액수가 2,366,887,985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의 기성공사대금 2,366,887,985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인정하는 2,328,622,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265,485원(=2,366,887,985원-2,328,62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을 기성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만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11. 26. 선고 92다4843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할 금액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공제를 인정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845,234,5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원고의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854,119,290원이며5)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를 납품한 업체에 자재비 등으로 6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 합계

2,349,353,790원(=845,234,500원+854,119,290원+650,000,000원)은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가 H(I회사), J(K회사)에 직불한 임금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I회사를 운영하는 H에게 2019. 1. 31.
49,500,000원, 2019. 3. 14. 55,000,000원을 송금하고, K회사를 운영하는 J에게 2019. 3. 14.
71,500,000원, 2019. 4. 16. 112,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3, 6, 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의 노임 직불에 동의하고 매월 기성에서 이를
공제처리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이 사건 타절합의 당시에도 피고가 지급한 자재비, 노임 등을 정산에
반영하기로 정하였던 점,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노무비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H와 J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근거로 H와 J에게 위 각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측 직원 L은 '2019년 3월 E호텔 인건비 관련 위임장 송부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측에 위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던 점, 원고도 2019. 1. 31. H의 계좌로 임금
71,500,000원을 이체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2019. 1. 31. H의 계좌로 이체한 위 각 돈은 그 직후
근로자들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H와 J은 이 사건 공사를 품목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각 돈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H 및 J에게 송금한
288,200,000원(=H 104,500,000원 + J 183,700,000원)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돈을 피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피고가 자재업체에 직불한 자재비 부분6) 을 제3, 5, 8,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표
'업체'란 기재 각 업체(이하 '이 사건 자재업체'라고 한다)가 피고 앞으로 '피고 주장'란 기재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발행된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포함하는 돈을 이
사건 자재업체에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사실과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자재업체에 송금한
762,858,157원 전액이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자재비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는 650,000,000원을 초과하여 피고가 자재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7) . 따라서 원고가 인정하는 650,000,000원에 한하여 공제되어야 한다.

(주)M	30,031,700	을 제3호증의 2, 5호증의 1, 18호증의 1
N	9,742,975	을 제3호증의 3, 5호증의 2, 18호증의 2
O	41,195,000	을 제3호증의 4, 5호증의 3, 18호증의 3
P	15,341,260	을 제3호증의 5, 5호증의 4, 18호증의 4
Q	2,553,100	을 제3호증의 6, 5호증의 5, 18호증의 5
R	121,003,658	을 제3호증의 8, 5호증의 6, 18호증의 6
S	19,247,140	을 제3호증의 9, 5호증의 7, 18호증의 7
T	59,981,680	을 제3호증의 11, 5호증의 8, 18호증의 9
U	29,700,000	을 제3호증의 14, 8호증 2면 '각 파이프' 부분
V	13,200,000	을 제3호증의 16, 5호증의 10, 8호증 2면 'ST'L PIPE' 부분
W(X회사)	385,000	을 제3호증의 17, 5호증의 11, 18호증의 13
Y(Z회사)	1,100,000	을 제3호증의 18, 5호증의 12
AA	419,376,644	을 제3호증의 19, 5호증의 13, 18호증의 14
합계	762,858,157	

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재업체에 지급한 돈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거나 일부 관련이 있더라도 단가 및 수량에 차이가 있다고 다투고 있다.

② 이 사건 자재업체 명의로 "원고로부터 자재를 발주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을 제3호증)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위 지급확인서의 제목과 형식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작성하여 이 사건 자재업체로 하여금 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③ 피고는 2018. 11. 16. 또는 2018. 12. 28.에 주식회사 M에 지급한 자재대금 중 30,037,700원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주식회사 M에 작성한

지급확인서(을 제5호증의 1)상의 내용8)은 위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M이 작성한 견적서(을 제18호증의 1)의 작성일자가 2019. 6. 11.로 이 사건 타결합의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작성일자 이전인 2018년 12월경에 자재를 발주하였다거나 피고가 주식회사 M에 지급한 돈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④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자재업체의 견적서 내지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자재의 품목명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최초 견적서(갑 제1호증의 3)나 이 사건 물량정산서, 원고의 정산청구서(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2)에 기재된 자재의 품목명과 상이한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재업체의 견적서나 거래명세서 상의 자재 전부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되었거나 해당 자재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물량합의서에 전부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자재비 직불에 동의하였고 자재 사급시에는 매월 기성에서 공제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작성된 2018. 8. 31.자 기성공제확인서에는 각파이프(50*50*1.4) 3,000本 5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기성금에서 공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T 주식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에는 2018. 8. 10. 피고에게 각관(50*50*1.4) 3,000개를 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성공제확인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2019. 6. 4.자 정산방법에 대한 합의에서도 기성공제확인서는 실투입비로 정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자재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나 거래명세서도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⑥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자재비에는 이 사건 타결합의 이후에 이 사건 자재업체에 지급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9). 피고는 이 사건 타결합의 이후 원고를 배제하고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는바, 이 사건 타결합의 이후에 지급된 자재대금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공급되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데 투입된 자재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안전용품 대금 부분

(1) 피고는 피고가 AB, AC(AD회사), AE(AF회사), AG(AH회사)에게 지급한 안전용품 대금 합계 38,708,340원도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C 사이에 작성된

현장설명서(을 제1호증의 4)10에 의하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 안전용품 대금은 C이 부담하는 것인 점, 안전관리비는 간접공사비에 포함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최초견적서(을 제1호증의 3)에 간접공사비는 공사대금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AB, AC(AD회사), AE(AF회사), AG(AH회사)에 지급한 안전용품 대금은 C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기성공제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안전관리비는 C과 피고 사이의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C이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가 현장설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안전관리사용내역(사용내역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본, 사진대지)을 제출하는 범위 내에서 C이 피고에게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세부적인 사항을 위 현장설명서에 따르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C에 위와 같은 안전관리사용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로 피고가 C로부터 안전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일반조건 말미에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C과 피고 사이의 계약에 따른 현장설명서, 시방서 준수조건에 따르며 작업의뢰서 일식처리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원고가 C에 안전관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는 이상 계약일반조건 상의 '현장설명서에 따른다'는 기재만으로 피고가 C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원고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을 제3, 5,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AB, AC(AD회사), AE(AF회사), AG(AH회사)이 작성한 지급확인서 및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위 각 서류는 현장설명서에서 정한 안전관리서류에 해당하는바, 피고 스스로 이를 C에 제출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과실로 C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자동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도 이유 없다.

2) 소결론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2,637,553,790원(=원고가 공제를 인정한 2,349,353,790원 + H, J에게 직불한 임금 288,200,000원)을 원고의 기성공사대금

2,366,887,985원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원고의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타절합의 당시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은 2,366,887,985원이고, 여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또는 원고를 대신하여 거래업체 등에 2,637,553,79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270,665,805원(=2,637,553,790원~2,366,887,98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270,665,8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29.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5.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재상

판사김태형

판사문성원

- 1)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물량정산서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이 2,621,878,376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20. 4. 1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자인한 기성공사대금 2,366,887,985원을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대금으로 인정하였다.
- 2) 원고는 소장 6면, 2020. 4. 13.자 준비서면 2면, 2020. 5. 19.자 준비서면 3면에서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845,234,5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직불처리한 임금이 833,388,000원이며, 직불처리한 자자대금은 650,000,000원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돈으로서

원고의 기성공제대금에서 공제할 부분이

2,328,622,500원(=845,234,500원+833,388,000원+650,000,000원)임을 인정하였다.

3) 원고는 2020. 4. 13.자 준비서면으로 위와 같이 주장을 정리하면서도 따로 본소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4) 피고는 반소장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또는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임금 및 자재비 2,605,458,949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원고의 기성공사대금 2,151,716,350원(부가가치세 별도)를 공제한 나머지 453,742,599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20. 10. 28.자, 2021. 1. 15.자 준비서면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413,704,942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면서도 따로 반소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5) 원고가 2020. 5. 19.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피고의 공사비 지급내역 주장에 대한 인부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표의 순번 21번의 '노임'이 '854,119,290원'임을 인정하고 있다(위 표의 '854,119,230원'은 '854,119,290원'의 오타로 보인다)

6) 안전용품 대금 부분은 아래 라)항에서 따로 판단한다.

7) 원고는 2020. 5. 19.자 준비서면 별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자재업체에 직불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지급액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비용이라거나 원고의 견적금액과 단가 등에 차이가 있다고 반박하였다. 다만, 원고는 그 금액 중 T 주식회사에 대한 36,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AA 주식회사에 대한 300,772,908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하여는 피고가 직불처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인정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공제를 인정한 자재비 650,000,000원에 포함된 금액이다

8) 주식회사 M 명의로 작성된 지급확인서(을 제5호증의 1)에는 "상기 현장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오발주분 재발주 및 도어자재 발주받아 현장(공장)에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며 이에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납품일자는 "2018년 12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9) 2019. 6. 28. 주식회사 N에 지급한 3,140,000원(을 제5호증의 2), 2019. 5. 31. 주식회사 Q에

지급한 931,000원(을 제5호증의 5), 2019. 6. 29. 주식회사 R에 지급한 21,236,500원(을 제5호증의 6), 2019. 6. 28. 주식회사 S에 지급한 2,484,400원(을 제5호증의 7), 2019. 6. 28. T 주식회사에 지급한 1,727,600원(을 제5호증의 8), 2019. 5. 31. AA주식회사에 지급한 42,919,072원(을 제5호증의 13)

10) 현장설명서(을 제1호증의 4)에 의하면, "당 현장에서 사용된 안전관리비는 항목 비목별로 계약분에서 정산한다(사용전 안전관리자와 협의), 안전관리비는 계약금액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기성청구시 안전관리사용내역(사용내역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본, 사진대지)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사용항목 외 사용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도 계약상 안전용품의 경우 안전관리사용내역서를 제출하는 범위 내에서 C로부터 지급받는다고 인정하고 있다.